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103호 2012. 04. 06.(금)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응봉산개나리

기관의 장		공 람										
선 람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2-526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2

◆ **공 고**

제2012-53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26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모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물보호·관리에 한함.

나. 동물등록제 시행근거를 규정함

- (1)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여 동물등록업무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 (2) 등록대행자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고 동물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입력하며,
- (3) 등록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함

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음.
- (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방법·절차·기간과 보호조치 방법 등을 정함
- (3)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4) 시장은 구청장에게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유기·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등 세부요령 규정

- (1)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격리·보호 관리와 소유권 귀속 및 분양처리 등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2)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호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공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3) 구청장이 보호 조치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분양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4) 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조치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소요된 경비를 청구하도록 함
- (5)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마. 현행 동물보호 제도의 보완 및 개선

- (1) 보호동물의 공고 방법을, 농림수산물부에서 운영관리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2) 장애인 보조견, 분양받은 유기견, 무선개체식별장치 장착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견 등에 대한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대상의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 : 6321-4069, FAX: 3707-9349, E-mail:

sby6007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go.kr](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3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조례안 (12건)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행정과
	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택시물류과
	3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4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감사담당관
	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조사담당관
	6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과
	8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버스관리과
	9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1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물관리정책과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의견 청취안 (3)	13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1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임대주택과
	15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동의안 (47건)	16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17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부
	18	서울특별시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19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0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실험 재위탁 동의안	택시물류과
	21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22	서울특별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사업의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대한 동의안	문화산업과
	23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자리정책과
	24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운영과
	25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진흥과
	26	서울특별시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과
	27	서울특별시 사회적배려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한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과
	28	서울특별시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정책담당관
	29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정책담당관
	30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생활지원과
	31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민간위탁동의안	도로행정과
	3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공동체담당관
	3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기업과
	34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외국인생활지원과
	35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정책과
	36	서울특별시 (가칭)강남권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업소상공인과
	3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창업소상공인과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동의안 (47건)	38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창업소상공인과
	39	서울특별시 강남·북 청년창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업소상공인과
	40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창업소상공인과
	41	서울특별시 독서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4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43	서울특별시 한강자전거공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44	서울특별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45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46	서울특별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47	서울특별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48	서울특별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49	서울특별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복지과
	50	서울특별시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
	51	서울특별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
	52	서울특별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
	53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
	54	서울특별시립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과
	55	서울특별시 노원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정책과
	56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정책과
	57	서울특별시 양천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정책과
	58	서울특별시 강북권역 의료지원형 아이존 동의안	보건정책과
	59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동의안	보건정책과
	60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동의안	보건정책과
	61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내식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2	서울디자인자산 민간위탁동의안	디자인정책과

